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회 람



제796호 2022. 9. 15.(목)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제 796호

사천시 조례 제1862호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15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
- 2. 의회 관련 법령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제796호

- 5.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 6.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 건의 소송수행
-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법률사항의 자문 등
- ② 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 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 하거나 소홀한 경우
 -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제 796호

- 4.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사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 대한 경우
- 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 7.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 요청 등) ①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 식의 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 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796호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 등)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법률고문 변호사 운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 낙 서

본인은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위 촉 장

소속 직위 성명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하를

사천시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0 0 . 0 . ~ 20 0 0 . 0 . 0 .)

년 월 일

사천시의회의장

■ 사천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9.15.>

자문 의뢰서

수신 :

참고사항

의 뢰 자	소속)	성명)				
구 분	예)행정감사,시정질문, 쟁송사건, 의회운영	의뢰일자				
제 목						
사실관계	※ 자문할 사안의 기본적인 사설	실관계 요약				
자문내용	※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형	장을 세부적으로 정리				
의뢰자 의 견	※ 가급적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관련 법령, 조례 등을 기재하고 해당 자료 첨부

■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9.15.>

자 문 기 록 부

	자문사항 회신결과					-
년월일	자문방법	의뢰인	의뢰내용	년월일	고문인	회신내용

[※] 자문방법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 기재

[※] 의뢰내용 및 회신내용은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

제796호

사천시 조례 제1863호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15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불용품패기(해체)조서"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로, "폐기 하여야"를 "폐기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물품관리관리"를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제796호

항 중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를 "제23조"로, "다음의 구분"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하며, 제12조에 따른"을 "하며,"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현재액을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96호

사천시 조례 제1864호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서예진 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15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사업)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 2.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796호

-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서예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96호

사천시 조례 제1865호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도시계 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15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96호

사천시 규칙 제80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행동 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15일

사천시장 박동식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 소속"을 "시 소속"으로, "사천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시(市)에"를 "시에"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 796호

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 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의3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무관련 공무원"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전단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6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 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796호

사천시 고시 제2022-19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숭인 및 변경 숭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9. 15.

사 천 시 장

		(2) 7) 2 4)					피수	승인자
연번	승인번호	(변경)승인 연월일	목적	위치	면적	승인 기간	주소	성명
1	2022-15	2022.9.8.	실안낙조 포토존 설치공사를 위한 가도	사천시 실안동 1248	676.2	2022.9.8.~ 2023.12.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2	2022-16	2022.9.8.	실안낙조 포토존 설치	사천시 실안동 1248	476	2022.9.8.~ 2036.12.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3	2022-17	2022.9.8.	거북선길 경관 정비 위한 가도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880-1	378.9	2022.9.8.~ 2023.12.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4	2022-18	2022.9.8.	거북선길 경관 정비(석방렴)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880-1	2,206.2	2022.8.4.~ 2036.12.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5	2022-19 (기간연장)	2022.9.8.	전력공급용 해저 케이블	사천시 신수동 60번지 선 일원	47	2019.10.1. ~2022.9.30. ⇒ 2022.10.1. ~2025.9.30.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제796호

사천시 고시 제2022-19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9. 15.

사 천 시 장

신 청 자		점용 · 사용 숭인사항				실시계획 ^	공사완료	
주 소	성 명	숭인번호 (연월일)	숭인기간	간 위 치 면적(㎡)		신고번호 (신고일자)	공사내역	신고수리
			2022.5.9. ~2051.12.31.	용현면 주문리 928-2번지	1,009.6	2022-6 (2022.5.25.)	어선접안용 부잔교	2022.6.29.
사천시 사천시장 용현면 (해양수산 시청로 77 과장)	(해양수산	2022–3 (2022.4.19.)	2022.4.19. ~2051.12.31.	용현면 신촌리 555-6번지선	701.2	2022-5 (2022.4.27.)	어선접안용 부잔교	2022.6.29.
N&F 11	과장)	2021-17 (2021.12.28.)	2021.12.28. ~2035.12.31.	시천시 용현면 금문리 379-9번지선 일원	605	2022-3 (2022.3.11.)	어촌정주어항 시설정비 (물양장 정비 1식)	2022.7.1.

제796호

사천시 고시 제2022-19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9. 15.

사 천 시 장

연	점용 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신고자	
번	승인번호 (승인일)	승인기간	위치	면적	신고번호 (신고일자)	공사기간	공사내역	주소	성명
1	2022-13 (2022.8.4.)	2022.8.4.~ 2036.12.31.	서포면 비토리 5-211번지선 일원 (하봉항)	690.2 직:48.0 간:642.2	(2022 8 26)	2022.8.26.~ 2022.8.31.	서사지하자)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 과)
2	2022-14 (2022.8.4.)	2022.8.4.~ 2036.12.31.	서포면 다평리 1286-5번지선 일원 (갯섬항)	387.2 직:54.0 간:333.2	(2022 8 26)	2022.8.26.~ 2022.8.31.	해상부유구조물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 과)

제796호

사천시 공고 제2022-1271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 개정(2021.12.7.)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노외 주차장 부대시설에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신 설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개정(안 제3조 의2)

제796호

- 나.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개정(안 제13조의2)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민원교통과)

전화번호: 055)831-3365, 팩스번호: 055)831-6029)]

^1 천 시 공 보

제79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	· - - - - - - - - - - - - - - - - - -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刊	고

제796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2022 - 제 호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9.

제 출 자: 민원교통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차장법」 개정(2021.12.7.)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신설하여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개정(안 제3조의2)
- 나.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개정(안 제13조의2)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 796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15. ~ 2022. 10.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제 79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으로, "개선필요사항 등"을 "개선필요사항등"으로, "연 면적"을 "연면적"으로, "이상이여야"를 "이상이어야"로 한다.

- 6.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제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u>법 제12</u>	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u>법 제12</u>
<u>조의3제1항</u> 에 따른 단지조성사	조의3제2항
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철도건설사업(<u>「철도의</u>	5 <u>「철도의 건</u>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
<u>법률」</u> 제2조에 따른 철도건	한 법률」
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	
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	
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	
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u><신 설></u>	6.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	
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 4항(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u>개선필요사</u> 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 면 절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여야 한다.

- 1. 2. (생략)
- ③ (생략)
-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 절) ① 노외주차장에 설치 할 수 설)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건축법

 - 2. 삭제
 - 3. 삭제
 - <u>4. 삭제</u>
 - 5. 세차장
 - 6. 자동차 부품 판매점
 - 7. 태양광 발전시설
 - ② (생략)

	- <u>같은</u>	법	제21조제2
<u> ই</u> }			
			<u>개선필요</u>
<u>사항등</u>			- <u>연면적</u> -
			<u>o</u>]
<u> 상이어야</u>			

- 1.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작동차 관련시설,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 려 법 규

□ 주차장법

-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 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 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 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2021. 4. 16.>
-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집배송시설
-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만 해당한다)
- 3. 노외주차장의 관리 ·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 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